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

2021. 8. 31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 
행정재경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안은 2021.8.20. 이수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, 2021.8.20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(의안번호 : 2645호)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, 부위원장은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, 15명 이하로 규정함(안 제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6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

라. 기타

1) 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1. 8. 21. ~ 2021. 8. 25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 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3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.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드립니다.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<생략>

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.

2.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.

3.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④ <생략>